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3-002-005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3. 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사업자로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대표자 성명	주 요	서 ^ㅂ	니 스	
사 업 장 주 소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매출액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이첩()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업무시스템에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계속 저장하면서, 퇴직 후인 에 신고인에게 업무 관련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41조제1항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본 건 신고인이 퇴직한 후에도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심인이 법령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때 다른 개인 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 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호	200	400	800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점,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금액 (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항	제75조제4항제1호	200	I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 (과태료)제4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2월 8일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	---	---	-------	----	----	---